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아 이 돌 봄 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7. 2. 28.로 만료됨에 따라

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의 운영역량을 활용하여 영유아 및 가정에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근거

(1)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2)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3)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의회 동의)

다. 필 요 성

(1) 영유아 및 가정의 다양한 육아수요에 대응하고 전문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육아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의 운영역량 활용이 필요하며,

(2)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라. 위탁사무 :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1)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및 시설물 관리 전반

(2) 보육기관 컨설팅, 보육교직원 각종 교육 및 정서·심리 상담, 보육기관 관련 정보 제공 등

(3) 영유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시간제보육서비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공통부모교육) 사업 등

(4) 영유아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발달지원(영유아 성장검사 사업 등), 장난감도서관(놀잇감 및 도서 대여) 운영 등

(5)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서비스(프로그램) 제공

마. 위탁시설

(1) 소 재 지 : 구미시 산동읍 신당4로1길 50

(2) 규 모 : 연면적 1,674.57㎡(지상 3층)

(3) 위탁시설 : 영·유아 체험놀이실,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구분	주요시설	면적(㎡)	비고
1층	장난감도서관, 시간제보육실, 상담실, 다목적교육실, 프로그램실	880.79	
2층	영·유아 체험놀이실, 수유실	533.85	
3층	회의실, 사무실	259.93	

바. 위탁기간 : 2027. 3. 1. ~ 2032. 2. 29.(5년)

사. 소요예산 : 연간 870백만원 정도(도비 45, 시비 825)

아.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자.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5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차. 성과평가 결과 : 탁월(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92점/ 장난감도서관 운영 90점)

3. 부서의견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풍부한 보육 현장 경험을 갖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위탁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3)「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1. 평가개요

○ 위탁사무명 :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수탁기관(단체) : 구미시어린이집연합회
○ 위탁기간 : 2022. 3. 1. ~ 2027. 2. 28.
○ 평가내용 :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
○ 평 가 자 : 2명(보육지원팀장, 업무담당자)
○ 평가방법 : 평가표에 의거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2. 평가결과 및 총평

○ 평가결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문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평가항목	총점	사업계획	조직인력	예산관리	사업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시설·물품관리	사업성과
배점	100	10	10	10	10	15	10	20	15
평점	92	9	9	8	10	14	8	20	14

(장난감도서관 산동점(센터 내))

부문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평가항목	총점	사업계획	조직인력	예산관리	사업관리	회원관리	프로그램	시설·물품관리	사업성과
배점	100	10	10	10	10	15	13	20	12
평점	90	10	9	9	9	14	8.5	20	10.5

○ 총 평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및 가정의 다양한 육아 수요에 대응하여 상담·교육·체험 등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과 이용자 만족도 등 전반적인 성과가 양호함.
-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이용자 수요를 고려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특색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2026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위탁사무 :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장난감도서관 운영

○ 감사기간 : 2026. 8. 24.(월) ~ 8. 26.(수)

○ 감사범위 : (‘25. 8. ~ ‘26. 7.) 위탁업무 관리·운영 실태 전반

○ 감 사 반 : 아이돌봄과 보육지원팀장 등 2명

○ 감사방법 : 실지감사(서류 및 시설 확인 현지방문 점검)

2. 감사결과

분 야 별	감사내용 (검토 또는 처분사항)	조치계획(의견)		비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무회계 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적정	적정	
	사업계획(예산변경) 변경 시 사전승인 여부	적정	적정	
	위탁금 목적외 사용여부	적정	적정	
	지출증빙서류 적정여부 및 회계장부 관리	주의	적정	
조직 및 복무관리	출근부 등 근무상황 확인	적정	주의	
	급여지급 적정여부	적정	적정	
문서관리	수탁사무 추진관련 문서관리, 운영일지 등	적정	적정	
민원관리	만족도 조사, 건의사항, 민원처리사항 등	적정	적정	
안전 및 시설관리	보험가입, 안전점검 관리 등	적정	적정	
물품 및 시설관리	물품대장 및 불용품 관리 등	적정	적정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제1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제2호의2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영유아 및 가정의 다양한 육아수요에 대응한 종합적인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추계기간은 2027. 3월부터 2032. 2월까지 5년으로 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870,000	870,000	870,000	870,000	870,000	4,35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45,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5,000
시 비	825,000	825,000	825,000	825,000	825,000	4,125,0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870,000	870,000	870,000	870,000	870,000	4,350,00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아이돌봄과 보육지원팀 박명희(☎480-6572)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사 무 명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위 탁 금			4,350,000천원(5년간)
위 탁 금 세 부 내 역			
기 간	항 목	계(천원)	산 출 내 역
2026년 기준	합 계	870,000	
	인건비	616,356	• 급여 및 제수당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524,338,000원 * 1식 - (장난감도서관) 92,018,000원 * 1식
	운영비	131,487	•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109,105,000원 * 1식 - (장난감도서관) 22,382,000원 * 1식
	사업비	122,157	• 사업비 - (육아종합지원센터) 116,557,000원 * 1식 - (장난감도서관) 5,600,000원 * 1식

소 관 부 서		아이돌봄과
입 안 자	과 장	오 명 화
	팀 장	이 수 경
	담 당 자	박 명 희 (480-6572)